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03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명서



2024. 4.

박 정 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박정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
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 
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8조의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  
하였습니다.
- 안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 
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.

## 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 
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 
의견은 없었습니다.

## 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 
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박정환 의원 대표발의】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00924043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연월일: 2024. 4. 5.  
발의자: 박정환, 박종길, 정창근,  
도하석, 황국주, 남현주,  
고명우

## 1. 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
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 
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8조)
- 나.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·  
징수하는 것을 명시함(안 제11조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, 제34조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### 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각각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,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4조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4조제3항”을 “제4조제5항”으로 하고, “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| 제2조(정의) ----- 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· 2. (생 략) 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“ <u>음주청정지역</u> 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“ <u>금주구역</u> ”이란 ----- .             |
| 4. (생 략)   |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( <u>음주청정지역</u> 의 지정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음주청정지역</u> 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 제4조( <u>금주구역</u> 의 지정) ① ----- .         |
| 1. ~ 4. (생 략)  | 금주구역 -----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구청장은 <u>음주청정지역</u> 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 금주구역 ----- . |
| <신 설>  |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----- .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 
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  
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 
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 
기 위해 자원봉사자(“자원봉사  
단체”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 
읍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 
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 
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  
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경우에는 그 취시, 상소와 범위  
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  
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⑤ 금주구역

#### 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

## 제4조 제5항

금주구역

### 제11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

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 
한 사람에게 「국민건강증진  
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  
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할 수 있다.

(2)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
· 징수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  
제법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1조와  
같음)

# 【 관계법령 】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  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  
1의2.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·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(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2.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

3.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3의2.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: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4. 법 제34조제3항제2호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   | 1차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| 2차<br>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| 법 제34 조제1항<br>제1호   |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0      | 500         |
| 나.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34 조제1항<br>제1호의2 |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0      | 500         |
| 다.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4 조제3항<br>제1호   |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라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34 조제1항<br>제1호의3 |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0      | 500         |
| 마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| 법 제34 조제2항<br>제1호   |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      | 300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바.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| 법 제34조 제3항<br>제2호  | 10  | 10  | 10  |
| 1)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| 5   | 5   |     |
| 2)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| 10                 | 10  | 10  |     |
| 3)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   |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     |     |     |     |
| 4)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|     |     |     |
| 사.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| 법 제34조 제1항<br>제2호  | 170 | 330 | 500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아.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<br>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<br>림·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<br>광고에 사용한 경우       | 법 제34<br>조제1항<br>제3호 | 170 | 330 | 500 |
| 자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<br>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<br>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4<br>조제1항<br>제4호 | 170 | 330 | 500 |
| 차.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<br>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<br>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<br>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34<br>조제2항<br>제3호 | 75  | 150 | 300 |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질서위반행위”란 법률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  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(私法)상·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
  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
2. “행정청”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,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(私人)을 말한다.
3. “당사자”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(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
제22조(질서위반행위의 조사)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

## 2.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

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.